

통고 및 불만제기: 교육구는 교육법 48853, 48853.5, 49069.5 5122 5.1 및 51225.2에 명시된 대로, 현재 교육구에 등록된 위탁 양육, 노숙자 학생 및 과거 청소년 법원 보호 학생들의 교육적 권리에 대한 표준 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해당될 경우, 이 통고서는 불만제기 절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UCP) 방침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방침 1312.3: 교육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되는 주 및 연방 법 그리고 규정 준수를 확실히 하도록 일차적 책임이 교육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가능한 한 언제라도 조기에 불만을 해결하도록 장려한다. 보다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 불만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는 민사소송법 타이틀 5 CCR 제 4600-4670 조항 및 관련 행정 규정에 명시된 일관적 불만 처리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

UCP의 적용을 받는 불만제기들 :

교육구는 다음의 불만제기에 대한 조사와 해결을 위해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UCP)를 사용해야 한다:

1. 성인 교육, 방과 후 및 안전 프로그램, 농업 직업 교육, 아메리칸 인디언 교육 센터 및 조기 아동 교육 프로그램 평가, 이중언어 교육, 교사들을 위한 동료 보조 및 프로그램 검토, 기술직 직업 및 기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아동 보호 및 발육 프로그램, 아동 영양 프로그램, 보충 교육, 통합된 카테고리칼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 학업 보조, 영어학습자 프로그램, 타이틀 I-VII의 연방 교육 프로그램, 이주자 교육, 리지날 직업 센터 및 프로그램, 학교 안전 계획, 특수교육 프로그램, 주정부 유아원 프로그램, 담배 사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 및 기술직 직업 교육, 학교에 기초한 조종된 카테고리칼 프로그램, Miller-Unruh 기초 읽기법, 불리한 입장에 있는, 방치된 또는 학교 중퇴 위기에 있는 비행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자본 비용 기금, 전문인 개발 프로그램, 혁신 프로그램, 전략 프로그램, 연방 클래스 규모 축소 계획 하에 설립된 프로그램, 학교 안전 및 폭력 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안전 및 약물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교육법 64000(a) 열거된 기타 교육구-실시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되는 주 또는 연방 법 또는 규정에 있어 교육구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불만제기. (5CCR 4610)
2. 교육구 프로그램과 활동에 포함되지만 주정부 재정 지원으로 기금을 직접 받거나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에 반해 그 사람의 실질적 또는 인종이나 민족, 피부색, 조상, 국적, 출신 국가, 이민 신분, 민족 그룹 정체성, 나이, 종교, 혼인 여부, 임신 또는 혼인 상태,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성, 성적 지향, 성별, 성별적 정체성, 표현 또는 유전학적 정보 또는 교육법 200이나 220, 행정법 11135 또는 형법 422.55에 제한받지 않고 인지된 특성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질적이거나 인지된 특성을 갖는 사람이나 그룹과의 관계에 기초한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학생, 직원 또는 교육구 프로그램에서 발생하였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5 CCR 4610)
3. 학교 교정에서 젓을 먹이는 학생의 모유 수유하기, 모유를 수유하는 유아, 또는 기타 수유와 관련되어 학생의 필요를 표현하기 위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할 요건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교육법 222)
4.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해 학생에게 비용, 디파짓 또는 기타 요금 부과 금지를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5 CCR 4610)
5. 지방 콘트롤 및 책무 계획안 (LCAP) 실시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교육법 52075)

6. 위탁 가정 학생 편에서 또는 학생 당사자에 의해 배치 결정,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과의 연락을 담당할 사람에 대한 교육구의 책임, 다른 학교나 교육구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학업 코스에 대한 학점 부여, 전학 또는 교육구에서 부과하는 졸업 요건 면제에 관해서 학생에게 적용되는 법적 요건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교육법 48853, 48853.5, 49069.5, 51225.1, 51225.2)
7. 미합중국법 타이틀 42 (42 USC), 11434a 조항에서 정의된 노숙 학생, 교육법 49701 에 정의된 과거 청소년 법원 보호 학교 학생 또는 군인 가정의 아동으로 고등학교 2 년이 지난 후 교육구로 전학온 학생 편에서 또는 학생 당사자에 의해 다른 학교나 교육구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학업 코스에 대한 학점 부여 또는 교육구에서 부과하는 졸업 요건 면제에서 학생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교육법 51225.1, 51225.2)
8. 어느 학기에서 한 주 이상 학과 내용에 대한 교육없이 또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함이 없이 이전에 만족스럽게 이수한 코스에 대해 학생에게 과제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법 51228.1 및 51228.2 요건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교육법 51228.3)
9.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체육시간 요건을 교육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교육법 51210, 51223)
10. 불만제기인이나 불만제기 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 또는 본 방침과 관련된 위반을 발견하였거나 보고를 한 사람에 대한 보복이 있었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11. 교육구 방침에서 구체화된 기타 불만제기.

주장의 본질에 따라 대체적 분쟁 해결 (ADR)이 당사자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위원회는 알고 있다. 중재와 같은 ADR 은 한 명 이상의 학생 그리고 어떤 성인도 포함되지 않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이 포함된 불만제기 또는 어느 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도록 강요되는 합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불만 해결을 위해 중재를 제안하거나 사용될 수 없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ADR 의 사용이 주 및 연방 법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구는 보복으로부터 모든 불만제기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불만에 대한 조사에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비밀은 법으로 요구되는 바와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에 대해,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불만제기인의 신원 및/또는 불만제기 주체가 해당 불만제기인과 다른 경우, 적절한 경우 그리고 불만 처리의 원래 모습이 유지되는 한, 관련인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UCP 에 해당되지 않는 주장이 UCP 불만제기에 포함된 경우, 교육구는 비-UCP 주장을 적절한 직원 또는 기관에 의뢰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 교육구 UCP 를 통해 UCP-관련 주장을 해결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실정법과 본 방침에서 구체화된 조치와 일정이 포함된 관련 요건들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 규칙들이 포함된 관련 요건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익히도록 교육구 직원들에게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적용되는 주 법 및 교육구 방침에 따라 모든 UCP 불만제기 그리고 이 불만제기에 대한 모든 조사 기록들을 보관해야 한다.

비-UCP 불만제기

다음의 불만제기들은 교육구 UCP 에 저촉되진 않지만, 그러나 특정 기관에 의뢰되어야 한다: (5 CCR 4611)

1. 아동 학대 또는 방치가 주장되는 불만제기는 카운티 소셜 서비스국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카운티 아동 보호 서비스부 (County Protective Services Division) 및 적절한 법집행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2. 허가된 시설물에서의 아동 발달 프로그램이 보건 및 안전을 위반했다는 주장의 불만제기는 소셜 서비스국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의뢰하고, 허가가 면제된 시설물에 대해선 적절한 아동 발달 지역 행정관(Child Development regional administrator)에게 의뢰해야 한다.
3.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불만제기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법률, 감사 및 준수 부서에 의뢰해야 한다.

고용 차별 또는 괴롭힘을 주장하는 불만제기는 행정 규정(AR) 4030 – 고용 차별금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교육구가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교과서 또는 학습 자료물의 충분성, 학생이나 교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응급 또는 비상 시설물들의 상태나 교사 결원 그리고 오배치와 관련된 불만제기는 AR 1312.4 - 윌리엄스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교육법 35186)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행정 규칙 1312.3:

목적 및 범위: 교육위원회가 다른 교육구 방침에서 구체적으로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관적 불만제기 일반 절차 (UCP)는 BP 1312.3 에서 구체화된 불만제기 조사 및 해결에 대해서만 사용된다.

준법(遵法) 사무관

교육구는 아래의 인사들을 불만제기에 대한 교육구의 대응 그리고 주 및 연방 민권법 준수에 책임이 있는 직원으로 지정한다. 또한 이들 인사들은 AR 5145.3 에서 특정한 준법 사무관으로 복무한다. AR 5145.3 –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관한 불만제기를 다루는데 책임이 있는 비차별/희롱 담당 직원. 이 인사들은 불만제기에 대한 조사 보고를 받고 조정하며 교육구의 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Kelly King 박사, 교육 서비스 - 부교육감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818) 241-3111 x1209

kking@gusd.net

Lena Richter 박사, 카테고리칼 프로그램 -디렉터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818) 241-3111 x1457

lrichter@gusd.net

불만제기를 받은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른 준수 사무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른 준수 사무관이 위임되는 경우, 적용시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인과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불만제기에서 공정한 조사 또는 해결에 방해가 되는 편견이나 이해상충이 있는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 사건에 위임되선 안된다. 준법 사무관에 반한 불만이 있거나 공정하고 편견없이 사건을 조사할 준법 사무관의 능력에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불만 조사 방법을 결정할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 의해 충원되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위임된 직원이 위임된 불만제기 이슈에 대해 훈련을 받았고 법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있고 불만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할 자격을 보장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훈련은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현재의 주 및 연방법과 규칙, 주장되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포함하여 불만제기 사건 조사 및 해결을 위해 적용되는 절차,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적용되는 표준 그리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다뤄야 한다. 위임된 직원은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결정된 법률 자문인과 접촉할 수 있다.

준법 사무관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행정관은 조사를 하는 동안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잠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준법 사무관 또는 행정관은 가능하다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잠정적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감, 교육감 대리인 또는 적절한 경우 학교 교장과 상담해야 한다. 잠정적인 조치는 준법 사무관이 이것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결정하거나 교육구의 최종적인 서면 결정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

공고문

A. 교육구의 UCP 방침 및 행정 규칙들은 직원 휴게실 및 학생회가 관리하는 미팅 룸을 포함하여 교육구의 모든 학교와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한다. (교육법 234.1)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학생, 직원, 교육구 학생의 학부모/후견인, 교육구 자문위원회 위원, 학교 자문위원회 위원, 적절한 사립학교 임원 또는 대표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에게 교육구의 UCP 서면 공고문을 매년 제공해야 한다. 이 공고문은 차별, 괴롭힘, 협박 및 약자 괴롭히기의 금지, 불법적으로 학생에게 부과하는 비용; 지방 콘트롤 및 책무 계획안 (LCAP) 요건 및 위탁 청소년, 노숙자 학생, 과거 청소년 법원 학교 학생 및 군인 가정 아동들의 교육적 권리와 관련된 요건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교육법 262.3, 48853, 48853.5, 49010-49013, 49069.5, 51225.1, 51225.2, 52075; 5 CCR 4622)

이 공고문은 :

1. 불만제기를 접수할 책임이 있는 사람, 직위 또는 부서를 알린다.
2. 해당되는 경우, 주 및 연방 차별 금지법 아래 적용 가능한 민법상의 구제 방안을 불만제기인에게 알린다.
3.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불법적인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포함된 경우, 불만제기인이 민사 법원 또는 미합중국 교육부 민권국 (OCR)과 같이 다른 공공 기관에서 구제 방안을 추구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적용되는 항소 절차를 불만제기인에게 알린다.
4. 다음과 같은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교육 프로그램들을 관장하는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법 그리고 규칙 준수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이 교육구에 있다.
 - b. 불만제기인이 일정 연장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불만제기 검토는 불만제기를 수령한 날짜로부터 60 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
 - c.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는 이것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6 개월 이전에 또는 주장되는 불법적인 차별에 대한 사실들을 불만제기인이 처음으로 알게 된 날로부터 6 개월 안에 접수해야만 된다. 접수 시기는 불만제기인이 제출한 서면 요청서에서 밝힌 연장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육감 또는 대리인에 의해 최대 90 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d. 불만제기는 서면으로 접수하고 불만제기인이 서명해야만 된다. 불만제기인이 예를 들어, 장애 또는 문맹과 같은 상태로 인해 서면으로 자신의 불만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 직원은 불만제기 접수에서 그를 도와야 한다.

- e. 불만제기가 서면으로 접수되지 않는지만 UCP 에 저촉되는 주장이 교육구에 통보된 경우, 교육구는 특정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 주장을 조사하고 다루기 위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대한 불만이 주장되었고 조사에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구는 차별 행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불만제기인과, 해당되는 경우, 다른 이에게 가해진 차별을 교정한다.
- f. 공립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은 교과과정 및 가외 활동을 포함하여 교육구 교육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기초적인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한 비용 지불을 요구받지 않는다.
- g. 교육위원회는 LCAP 수립과 점검에 학부모/후견인, 학생,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포함하여 업데이트 된 LCAP 채택이 매년 요구된다.
- h. 위탁 가정 청소년은 자신의 교육 배치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 등록 및 체크아웃 그리고 이러한 요건들을 보장받고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학교들 사이의 전학 또는 한 교육구로부터 다른 교육구로 전학하는 경우, 자신의 학점, 기록 및 성적이 적절하게 전달되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입양가정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교육구 연락관의 책임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 i. 위탁 가정 청년, 무주택 학생 또는 과거 청소년 법원 학교 학생이 교육구 고등학교로 전학오거나 교육구 사이의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에게 교육구는,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통지할 책임이 있다:
 - (1) 다른 공립학교, 청소년 법원 학교, 사립학교 또는 무종파 학교나 기관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학업 또는 부분 학점을 인정하고 이수한 학업에 대한 학점 전체 또는 일부 학점을 발급한다.
 - (2) 다른 공립학교, 청소년 법원 학교 또는 사립학교, 무종파 학교나 기관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학업 또는 일부 학업에 대한 재수강이 요구되지 않는다.
 - (3) 학생이 전학하기 이전에 2 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경우, 교육구는 교육구에서 채택한 학업과 교육법 51225.1 에 의해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위원회 요구의 졸업 요건 정보를 제공한다.
- j. 불만제기인은 교육구 결정을 받은 후 일력으로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CDE 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교육구 결정에 항소할 권리를 갖는다.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에서 교육구 결정에 만족하지 않은 상대방 역시 불만제기인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CDE 에 항소할 권리를 갖는다.
- k. CDE 항소에는 교육구에 접수한 불만제기서 사본과 교육구 결정에 대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 l. 교육구 UCP 사본은 무료로 가용하다.

연례 공고문과 준법 임원(들)에 대한 완전한 연락 정보 그리고 교육법 221.61 에 의해 요구되는 타이틀 IX 와 관련된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가용한 경우, 교육구에서 지원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B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영어 미숙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이 포함하여 모든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이 UCP 와 관련된 교육구 방침, 규정, 서식, 및 공고문에서 제공되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특정 교육구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의 15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영어 이외 한 종류의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경우, UCP 와 관련된 교육구 방침, 규정, 서식, 및 공고문은 교육법 234.1 및 48985 에 따라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기타 모든 경우, 교육구는 영어에 미숙한 학부모/후견인을 위해 관련된 모든 UCP 정보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구 책임

불만제기인이 서면으로 일정 연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한, 모든 UCP-관련 불만제기는 교육구의 불만제기 수령 후 일력으로 60 일 안에 조사하고 해결되어야 한다. (5 CCR 4631)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에서 불만제기인이 조사 및 불만 해결을 위한 일정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교육구는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된다.

준법 담당 부서는 조사 동안에 취한 조치 그리고 5 CCR 4631 와 4633 준수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각각의 불만제기와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들의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불만제기 주장에 포함된 모든 당사자들은 불만제기 접수와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통보를 받는다. 그럼에도 준법 사무관은 조사 수행, 후속적인 교정 조치, 진행중인 모니터링 수행 또는 절차적 순수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개를 제외하곤 모든 불만제기 또는 보복이나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대한 주장들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CCR 4630, 4964)

모든 불만제기인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불만제기 (고발) 접수

불만제기는 준법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사무관은 각각의 조항 및 접수 도장이 찍힌 날짜와 함께 불만제기 수령 일지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불만제기는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불만제기인이 서명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장애 또는 문맹과 같은 상태로 인해 서면으로 자신의 불만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 직원은 불만제기 접수에서 그를 도와야 한다. (5 CCR 4600)

불만제기는 또한 해당되는 다음 규칙들에 의거해 접수되어야 한다:

1. 교육 위원회 방침("UCP 의 적용을 받는 불만" 부분의 #1 항)에 명시된 프로그램들의 운영에 적용되는 주 또는 연방 법 또는 규정에 교육구의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은 개인, 공립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5CCR 4630)
2. 학생에게 비용, 디파짓 요구 및 부과 금지에 관한 법령 그리고 LCAP 과 관련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불만제기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비준수 주장을 보강하는 증거로 이어지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학생에게 불법적으로 비용 부과를 금지하는 법 위반에 대한 불만제기는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나 대리인에게 접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불만제기는 주장되는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2075; 5 CCR 4630)
3.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는 자신이 한 개인 또는 그와 연관된 특정 계급의 사람들에 의해 불법적인 차별을 직접 겪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접수될 수 있다. 불만제기는 주장되는 불법적인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전 또는 주장되는 불법적인 차별 사실들을 불만제기인이 처음으로 알게 된 날로부터 6 개월 안에 시작되어야 한다. 접수 시기는 불만제기인이 제출한 서면 요청서에서 밝힌 연장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최대 9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CCR 4630)

4.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가 익명으로 접수된 경우, 준법 사무관은 제공된 정보의 구체성 및 신뢰성 그리고 그 주장의 심각성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적절한 다른 대응을 추구해야 한다.
5.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대한 불만제기인 또는 불만제기인 이외 달리 주장되는 피해자의 비밀 유지 요청이 있는 경우, 준법 사무관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교육구는 조사 수행이나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하는 능력에서의 제약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비밀 유지 요청을 존중하면서 교육구는 조사에서 합리적인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 불만제기인의 요청에 일관성을 갖고 해결/반응해야 한다.

중재절차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들과 함께 중재절차 사용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중재절차는 한 명 이상의 학생이 포함되었고 어떠한 성인도 포함되지 않은 불만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주장 또는 어느 당사자가 중재절차 참여를 강요받았다고 느끼는 합리적인 위험이 포함된 불만제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절차를 제안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동의하는 경우, 준법 사무관은 이 절차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제기에 대한 중재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준법 사무관은 중재인이 관련된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준법 사무관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언제라도 이 비공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한다.

만일 법의 범위 안에서 중재절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이같은 시간 연장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절차 사용은 교육구의 불만제기 조사 및 해결을 위한 일정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중재가 성공적이며 불만제기가 철회된 경우, 교육구는 중재를 통해 합의된 사안들에 한해 조치를 취한다. 중재가 실패한 경우, 그러면 교육구는 본 행정 규정에서 구체화된 후속 조치들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불만제기에 대한 조사

준법 사무관의 불만제기 수령 10 일 이내에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준법 사무관은 조사를 시작하고 업무일로 1 일 이내에 불만제기인 및/또는 대리인에게 불만제기에 포함된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불만제기에서의 주장을 보강할 증거 또는 증거로 이어질 정보를 준법 사무관에게 제출할 기회를 불만제기인 및/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조사 기간 동안 언제라도 이같은 증거 또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조사 수행에서, 준법 사무관은 가용한 모든 서류들을 수집해야 하며 불만제기와 관련된 조사 과정 동안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추가 증거나 정보를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기록, 노트 또는 언급들을 검토해야 한다. 사무관은 불만제기와 관련된 정보와 함께 가능한 모든 증인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관련된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접근 가능한 타당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적절한 간격을 두고 준법 사무관은 양 당사자에게 조사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를 조사하기 위해, 준법 사무관은 주장되는 피해자, 가해자 및 관련된 다른 증인들을 사적이며 개별적으로 그리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면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직원 또는 법적 자문인이 조사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불만제기인이 교육구 조사관에게 불만제기 주장과 관련된 서류나 다른 증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서 비협조, 거부 또는 달리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주장을 보강할 증거 부족으로 불만제기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슷하게, 피고발인이 교육구 조사관에게 불만제기 주장과 관련된 서류나 다른 증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서 비협조, 거부 또는 달리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수집된 증거에 근거해 법위반이 발생하였고 불만제기인에게 유리하게 구체책을 부여하는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CCR 4631)

법에 의거하여, 교육구는 조사관에게 불만제기 주장과 관련된 기록과 다른 정보 접근을 허용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를 방해해선 안된다. 조사에서 교육구에 의한 비협조나 거부는 수집된 증거에 근거해 법위반이 발생했고 불만제기인에게 유리한 구제책 부여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CCR 4621)

준법 사무관은 불만제기에서 팩트 주장의 진실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증거의 우세”를 적용해야 된다. 이것은 주장이 거짓보다는 더 진실일 것 같다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판정 보고

불만제기인과 서면 합의로 연장되지 않는 한, 최종 결정은 교육구에서 불만제기를 받고 일력으로 60 일 이내에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야 한다. 불만제기를 받고 30 일 안에 준법 사무관은 하기의 “최종 서면 결정” 섹션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여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야 한다. 불만제기인이 준법 사무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는 업무일로 5 일 안에 자신의 불만을 서면으로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 문제를 차기 교육위원회 정기모임에서 숙고하거나 불만제기에 반듯이 응답해야 할 60 일의 시간 제한을 맞추기 위해 특별 교육위원회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사건은 비공개 모임에서 숙고되어야 한다. 준법 사무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경우, 교육위원회는 불만제기 비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불만제기를 심리하는 경우, 준법 사무관은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교육구가 불만제기를 처음 받은 후 일력으로 60 일 또는 불만제기인과 서면으로 합의한 특정 기간 안에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야 한다. (5 CCR 4631)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 해결에서 교육구 결정을 불만제기인에게 보낸 동일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도 역시 보내야 하며 그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위원회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최종 서면 결정

불만제기 해결 방법에 대한 교육구 결정은 서면으로 불만제기인에게 보내야 한다. (5 CCR 4631)

결정과 관련된 부분 정보는 불만제기인이 아닌 피해자 그리고,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한, 결정 수행에 포함되었거나 불만제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자들과 교육구 법률 자문인은 상담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에서, 주장되는 피해자에게 보내는 교육구의 결정 통지서에는 주장되는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제재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불만제기에 영어 미숙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이 포함되었고 관련된 학생이 등교하는 학교에는 영어 이외의 단일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학생이 15 퍼센트 이상인 경우, 결정문은 그 언어로도 번역되어야 한다. 모든 다른 경우에, 교육구는 영어 미숙 학부모/후견인들이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불만제기에 대한 결정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5 CCR 4631)

1. 사실에 대한 판정은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였다. 사실에 대한 결정 도달에서, 다음의 요인들이 고려되었다:
 - a. 증인들의 증언
 - b. 관련된 사람들의 상대적 신뢰성
 - c.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이 사건을 대하는 방식
 - d. 주장되는 행위에 대한 관련 서류 또는 다른 증거
 - e. 과거 사례들에서 제기된 가해자가 취한 유사한 행위
 - f. 불만제기인에 의해 제기된 과거의 거짓 주장들
 2. 법에서의 결론
 3. 불만제기에 대한 처분
 4. 이러한 처분의 논리적 근거
-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회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에서, 이에 대한 처분에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 보복 또는 차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대적 환경 존재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숙고에 포함될 수 있다:

- a. 이러한 비행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 b. 비행의 유형, 빈도 및 지속 기간
 - c. 주장되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 d. 이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숫자 및 이 행위는 누구의 지시로 벌어졌는가
 - e. 학교 사이즈, 사건 장소 및 이 사건이 벌어졌던 전후상황
 - f. 학교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포함된 기타 사건들
5. 불만제기에서의 주장을 다루기 위해 그리고 학생 비용 불만제기에 대해 교육법 49013 및 5 CCR 4600 에 있는 구제 방법에 맞게 취했거나 취해질 교정 조치들.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대한 불만제기에 대해 법으로 요구되는 통지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a.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교정 조치.
 - b. 불만제기인 또는 불만제기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제안되거나 제공되는 개별적인 구제 방법. 그러나 이 정보는 가해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 c. 적대적인 환경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 취한 체계적인 조치
6. 교육구의 결정을 일력으로 15 일 안에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에 항소할 불만제기인의 권리 그리고 이같은 항소를 시작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통보

결정에는 재발이나 보복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절차 그리고 이와 연결되어 일어나는 문제 보고 절차들이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주법에 근거하여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에서, 불만제기인에게 통지될 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 a. 교육구 불만제기 절차 이외에 그는 CDE 에 항소장을 접수한 뒤 일력으로 60 일 안에 중재 센터 또는 국선/사적 변호사의 도움을 포함하여 민법에서 가용한 구제 방법들을 추구할 수 있다. (교육법 262.3)
- b. 주법원에 강제적 금지 구제를 추구하는 불만제기 또는 연방법에 근거해 차별을 고발한 불만제기인에게는 60 일 간의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법 262.3)
- c. 인종, 피부색, 출신국, 성, 성별, 장애 또는 나이에 근거해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제기는 주장되는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 일 안에 미합중국 교육부 민권국, www.ed.gov/ocr 에 접수할 수 있다.

교정 조치

불만제기가 실제적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준법 사무관은 법에서 허용하는 적절한 교정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학교 또는 교육구 차원에 중점을 둔 더 큰 범위의 적절한 교정 조치에는 교육구 방침; 교사, 교직원 및 학생 훈련; 학교 방침 업데이트; 또는 학교 환경 조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관련된 불만제기의 경우,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적절한 처리 방안들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 카운슬링
2. 학업 지원
3. 보건 서비스
4. 교내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보호인 배정
5. 가용한 자원 및 유사한 사건이나 보복을 보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6.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피해자 분리, 피해자에게 이러한 분리는 처벌이 아니라는 설명 제공
7. 정의 복원
8. 후속 조사 - 이러한 행위가 멈추었고 보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 조사
9. 징계조치로 이어진 피해자의 지난 행동이 피해자가 받는 치료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불만제기에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포함된 불만제기에서, 가해 학생에게 중점을 둔 적절한 교정조치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법에서 허용되는 학급 변경 또는 전학
2. 학부모/후견인 면담
3.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4. 긍정적인 행동 지원
5. 학생 성공팀 (SST) 의뢰
6. 가외활동이나 준-교과 활동 참여가 거부되거나 법에서 허용되는 다른 특권 취소
7. 법에서 허용되는 정학이나 퇴학과 같은 징계

직원이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저지른 것으로 판정된 경우, 교육구는 적용가능한 법과 단체교섭 합의에 의거해 최고 해고가 포함된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구는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 행동 유형에 대해 학생, 직원 및 학부모/후견인들의 이해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보고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넓게 학교 커뮤니티에서의 훈련과 중재 역시 고려할 수 있다.

불만제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처리 방안이 불만 제기자 또는 기타 다른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 비용, 보증금 및 기타 다른 요금,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 수업시간 량(분 수) 또는 지역 콘트롤 책무안(LCAP)과 관계된 요건에 대한 법률의 비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교육구는 주 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절차들에 따라 모든 피해 학생 및 학부모/후견인들에게 처리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1223, 52075)

학생 비용에 관한 법에 대해 비준수가 주장하는 불만제기에 대해서 교육구는 불만제기 접수 이전 1 년의 기간 동안에 불법적인 비용을 지불한 모든 피해자 학생과 학부모/후견인들을 판별하고 전 금액 상환을 위해 성심성의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시도를 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 CCR 4600)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로의 항소

교육구의 최종 서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불만제기인은 교육구 결정을 수령한 후 일력으로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CDE 에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법 222, 48853, 48853.5, 49013, 49069.5, 51223, 51225.1, 51225.2, 51228.3, 52075; 5 CCR 4632)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이 주장되는 불만제기에서 상대방이 교육구의 최종 서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는 불만제기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CDE 에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불만제기인 또는 상대방은 이 결정에 대한 항소의 근거 및 사실이 부정확하며/또는 법을 잘못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항소장에는 지역 교육구에 접수한 불만제기서 원본의 사본 및 해당 불만제기에 대한 교육구의 결정 사본을 함께 CDE 로 보내야 한다. (5 CCR 4632)

CDE 로부터 불만제기인이 교육구의 결정에 항소하였다는 통지를 받으면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들을 CDE 로 보내야 한다: (5 CCR 4632)

1. 최초의 불만제기서 사본
2. 서면 결정 사본
3. 사건 본질에 대한 요약 및 결정문에서 다루지지 않은 경우, 교육구에서 수행한 조사 범위
4. 당사자들에 의해 제출되었고 조사판에 의해 수집된 모든 메모, 면담 및 서류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사 파일 사본
5. 불만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 보고서
6. 교육구의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 사본
7. 기타 CDE 에 의해 요청된 관련 정보